

업무위탁에 관한 고시

1. 신기술(NET)·신제품(NEP)지정 평가기관

가. 위탁기관

구 분	평 가 기 관
신기술(NET)지정 평가	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
신제품(NEP)지정 평가	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

나. 위탁사무의 내용

① 신기술(NET) 지정 평가

- 신기술지정 신청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신청의 접수
- 신기술지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
- 신기술 지정,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
- 신기술 지정, 신기술적용제품 확인, 신기술 지정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심사
- 신기술 지정,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
- 지정신기술에 대한 사후관리
-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 사전통지
- 신기술 지정서 및 신기술적용제품확인서 재발급 신청의 접수
- 평가위원 관리시스템 운영
- 평가업무규정 관리
- 기타 지정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

② 신제품(NEP) 지정 평가

- 신제품 지정 신청의 접수
- 신제품 지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
- 신제품 지정 및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
- 신제품 지정 및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심사
- 지정신제품에 대한 사후관리
- 신제품 지정의 유효기간 사전통지
- 신제품 지정서 재발급 신청의 접수
- 평가위원 관리시스템 운영
- 평가업무규정 관리
- 기타 지정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

2.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에 관한 업무 등 위탁기관

가. 수탁기관

민·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12조에 따른 민·군기술협력 전담기구

나. 위탁사무의 내용

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에 관한
업무 및 출연·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에 관한 업무